

임실군의회 입법예고 공고 2024 - 41호

임실군의회 장종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임실군 화재피해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임실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10월 14일

임실군의회 의장



임실군 화재피해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종민 의원 대표발의)

1. 제정이유

- 임시거처지원금을 신설하여 화재피해 주민의 경제적인 부담 경감과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임시거처지원금 조항 신설(안 제5조)
 - 지원금액: 최대 300만원
 - 지원기간: 임시거처 입차일부터 최대 6개월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2024년 10월 19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1) 주 소: (55927) 임실군 임실읍 수정로 30, 임실군의회(의회사무과)

2) 전 화: 063-640-2883, 팩스 063-640-2699

3) 전자우편:charity81@korea.kr

4. 조례안: 붙임

임실군 화재피해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실군 화재피해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원하는데”를 “지원하는 데”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을 “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으로, “공동주택) 에”를 “공동주택) 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사람을말한다”를 “사람을 말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임시거처지원금”이란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화재피해를 입었을 경우 피해주민이 화재피해를 복구하는 기간 동안 주택이나 숙박시설을 임차하여 지낼 수 있도록 일부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4조의 제목 “(피해지원금의 지급대상)”을 “(피해지원금 등의 지급대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피해지원금”을 “피해지원금, 임시거처지원금 등(이하 “피해지원금 등”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피해지원금”을 “피해지원금 등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기관·단체 등에서 지원을 받은 경우. 다만,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의 제목 “(피해지원금의 지급기준)”을 “(피해지원금 등의 지급기준)”으

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피해지원금**”을 “**피해지원금 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1. 피해지원금

가. 불에 탄 면적이 전체 면적의 70퍼센트 이상이거나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 500만원

나. 불에 탄 면적이 전체 면적의 30퍼센트 이상 70퍼센트 미만인 경우: 300만원

다. 불에 탄 면적이 전체 면적의 30퍼센트 미만인 경우: 200만원 이하

2. 임시거처지원금

가. 지원금액: 최대 300만원. 다만, 임시거처지원금은 실비로 지급한다.

나. 지원기간: 임시거처 임차일부터 최대 6개월

제6조 전단 중 “**피해지원금**”을 “**피해지원금 등**”으로, “**화재 피해**”를 “**화재피해**”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피해 지원금**”을 “**피해지원금 등**”으로, “**지급하고, 「별지 제4호**”를 “**지급하고, 「별지 제4호」**”로 한다.

제8조의 제목 “(**피해지원금의 수령 자격**)”을 “(**피해지원금 등의 수령 자격**)”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피해지원금**”을 “**피해지원금 등**”으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피해지원금 등의 회수**) 군수는 피해주민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지원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 지급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1. 신청사항”란 및 신청인 제출서류란의 “④ 임시거처 임차료 증빙서류(임대차계약서, 임차료 수수료 영수증 등)”을 신설하고, “1. 피해자 정보” 및 “2. 피해내역”을 “2. 피해자 정보” 및 “3. 피해내역”으로 한다.

1. 신청사항

피해지원금[]	임시거처지원금[]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2. 피해자 정보

3. 피해내역

신청인 제출서류	① 관할 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 ② 통장사본 ③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 정보처리 동의서 ④ 임시거처 임차료 증빙서류(임대차계약서, 임차료 영수증 등)
----------	---

별지 제4호서식에 “구분”란을 신설 한다.

(단위: 천원)

연번	구분	지급일	지급대상	주 소	지급액	비고
----	----	-----	------	-----	-----	----

부 칙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로 인하여 주택 등에 피해를 입은 주민을 <u>지원하는데</u>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u>지원하는 데</u>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화재”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에 해당하는 화재로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따른 농축산업 또는 부대시설 목적으로 사용되는 건축물 및 사람이 실제 거주하는 주택(「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단독주택 또는 <u>공동주택</u>)에 불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것을 말한다.	1. ----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 ----- ----- ----- ----- ----- --- <u>공동주택</u>)에 ----- ----- --.
2. (생략)	2. (현행과 같음)
3. “피해주민”이란 임실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화재로 피해를 입은 <u>사람을 말한다</u> .	3. ----- ----- -- <u>사람을 말한다</u> .
<u><신설></u>	4. “임시거처지원금”이란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화재피

해를 입었을 경우 피해주민이 화재피해를 복구하는 기간 동안 주택이나 숙박시설을 임차하여 지낼 수 있도록 일부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4조(피해지원금의 지급대상) ① 군수는 피해주민에게 피해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기관·단체 등에서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 다만,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2. ~ 4. (생략)

제5조(피해지원금의 지급기준) ① 피해지원금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1. 불에 탄 면적이 전체 면적의 70퍼센트 이상이거나 복구가

제4조(피해지원금 등의 지급대상)

① ----- 피해지원금, 임시거처지원금 등(이하 “피해지원금 등”이라 한다)---.

② -----
----- 피해지원금 등의 -----
-----.

1.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기관·단체 등에서 지원을 받은 경우. 다만,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2. ~ 4. (현행과 같음)

제5조(피해지원금 등의 지급기준)

① 피해지원금 등-----
-----.

1. 피해지원금

가. 불에 탄 면적이 전체 면적

불가능한 경우: 500만원

2. 불에 탄 면적이 전체 면적의 30퍼센트 이상 70퍼센트 미만인 경우: 300만원

3. 불에 탄 면적이 전체 면적의 30퍼센트 미만인 경우: 200만원 이하

② · ③ (생략)

제6조(지원 신청) 피해지원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화재가 진화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화재 피해 지원 신청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 정보 처리 동의서를 작성하여

의 70퍼센트 이상이거나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 500만원

나. 불에 탄 면적이 전체 면적의 30퍼센트 이상 70퍼센트 미만인 경우: 300만원
다. 불에 탄 면적이 전체 면적의 30퍼센트 미만인 경우: 200만원 이하

2. 임시거처지원금

가. 지원금액: 최대 300만원.
다만, 임시거처지원금은 실비로 지급한다.

나. 지원기간: 임시거처 임차일부터 최대 6개월

<삭 제>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6조(지원 신청) 피해지원금 등-

----- 화재피해 -----

관할 읍·면장에게 지원을 신청 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주민이 사망·실종·부상·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주민의 가족이나 거주지의 이장·반장이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제7조(지원 결정) ① (생 략)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신청서와 조사 결과서를 확인하여 피해 지원금을 7일 이내에 지급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피해지원금 지원 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피해지원금의 수령 자격)

피해지원금은 피해주민이 직접 수령한다. 다만, 피해주민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피해주민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수령한다.

<신 설>

-----.

-----.

제7조(지원 결정) ① (현행과 같 음)

② -----

-- 피해지원금 등-----
지급하고, 「별지 제4호」----

-----.

제8조(피해지원금 등의 수령 자 격) 피해지원금 등-----

-----.

-----.

제9조(피해지원금 등의 회수) 군

수는 피해주민이 거짓이나 부정 한 방법으로 피해지원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 지급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임실군 화재피해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화재피해 주민 지원금

나. 제4조(피해지원금 등의 지급대상), 제5조(피해지원금 등의 지급기준), 제7조(지원 결정)

2. 비용추계의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총사업비: 105백만원
- 지원대상: 화재피해를 입은 임실군민
- 지원내용
 - 피해지원금: 75백만원

구분	화재피해면적 70% 이상	화재피해면적 30% 이상 70% 미만	화재피해면적 10% 이상 30% 미만
지원 금액	5백만원	3백만원	2백만원

- 임시거처지원금: 30백만원
 - 지원금액: 최대 3백만원
 - 지원기간: 최대 6개월 이내

나. 추계 결과

- 2025년~2029년: 105백만원×5년=525백만원

다.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연도별 비용추계표 참조

3. 재원조달방안

- 총 소요예산: 525백만원(군비 525백만원)

4. 작성자

- 장종민 의원

붙임 : 연도별 비용추계표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5년)	2차년도 (2026년)	3차년도 (2027년)	4차년도 (2028년)	5차년도 (2029년)	계
세 입		105,000	105,000	105,000	105,000	105,000	525,000
군 비		105,000	105,000	105,000	105,000	105,000	525,000
세 출		105,000	105,000	105,000	105,000	105,000	525,000
피해지원금		75,000	75,000	75,000	75,000	75,000	375,000
임시거처지원비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150,000
재원 조달							
자체 수입	소 계						
	군 비	105,000	105,000	105,000	105,000	105,000	525,000
지방채							
기 금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복구하여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